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7, 박성준의원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2024. 10.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 10. 3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성준의원)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상 수)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	② ----- -----

현행	개정안
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 ----- ----- 다만, 법 제 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당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④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

현행	개정안
<신설>	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함¹⁾.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²⁾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 ⑦ (생략)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2) “제1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를 말함(「국회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약칭)
- 3) 규칙 제정 당시 이와 같이 위원 추천비율을 명시한 취지는 교섭단체가 2개인 양당제를 전제로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당시 추천위원회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2가지 안이 논의되었는데, 1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4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안(새누리당안), 2안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와 ‘그 외 교섭단체(야당)’가 각각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안(새정치민주연합안)이었음. 논의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가 특별검사 추천방식·임명절차, 직무범위 및 권한, 사건처리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미리 법률로 정해두고,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 및 수사대상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추천위원회 구성 시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동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은 제외)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되,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이해충돌 해소의 기대효과,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규정 취지의 명확성 및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자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2조제2항 단서는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제한 요건을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여·야 각각 2인 추천을 명시하는 안으로 합의되었고, 양당제를 전제로 하여 국회법에서 ‘제1교섭단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용어를 현행과 같이 변경하였음. (제323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소위원회 제2차(2014.4.16.) 회의록 참조)

- 4) 동 개정안은 대통령의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단서 신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헌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 ⁵⁾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헌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신 설>	1. 대통령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6)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③ ----- ----- -----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 소속 의원 수----- ----- -----.
<신 설>	④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 는 경우에는 국회의장 이 추천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
-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박성준)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경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하여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 몫을 2개의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되,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개정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추천 몫의 비교섭단체 배분 시, 비교섭단체간 의석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생 정당이나 소속 의원들이 80년대생으로 구성된 젊은 정당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교섭단체간 협의나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천하람 위원).

7. 수정안의 요지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이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제한요건을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로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관련 사항을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2.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0.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이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제한 요건을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로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등).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으로, “소속되거나,”를 “소속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를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석 수”를 “소속 의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

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u>다만,</u> <u>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u>	② ----- ----- ----- ----- ----- ----- ----- ----- ----- ----- ----- ----- ----- ----- ----- ----- <u>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u> <u>소속되거나</u> ----- -----.

<신 설>

<신 설>

<신 설>

1. 대통령

2.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대통령의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교섭단체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
-----.
-----소속 의원 수-----

-----.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국회의장은 위
원 추천을 위해 제
2항에 따른 교섭단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
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
에 한정한다)가 2
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1
명을 각각 추천하
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
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
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
에 한정한다)가 2
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

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選數)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u><신 설></u>	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u><신 설></u>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